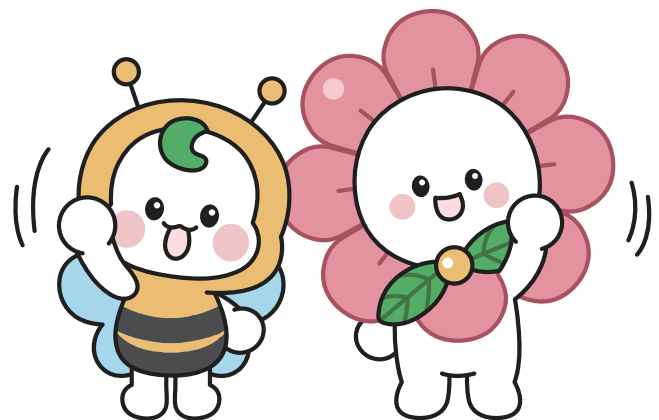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민간자율 기획사업





Win-Win Cooperation Fund

CONTENTS



상생협력기금 브로서는
위 QR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동반성장위원회 소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동반성장위원회 소개	4
-----------------------------	---

2.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① 개념 및 사용용도	5
② 추진경과 및 출연현황	6
③ 출연혜택 및 관련법령	7
④ 검토사항 및 활용사업	11

3. 민간자율 기획사업

① 정의 및 추진절차	13
② 지원사례	15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및 동반성장위원회 소개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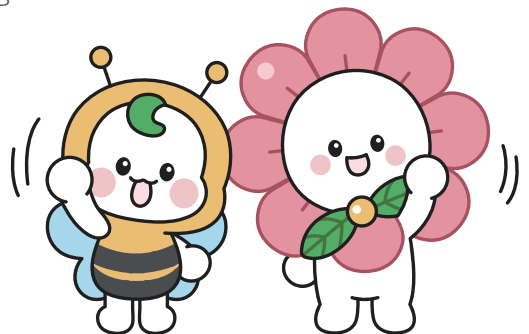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 (상생법 제20조, FTA농어업법 제18조2)
-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 조성 및 확산을 도모 (상생법 제20조의2)

연혁

- '04.1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및 출범
- '06.03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10.12 :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 '17.01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명칭 변경
* FTA농어업법에 따라 재단 내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운영분부를 설치
- '17.11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법제화('18. 5. 29 시행)

역할 및 기능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상생협력법 제20조 제2항)**
 - 대·중소기업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운영 및 평가 지원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및 수·위탁거래 공정화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영
- **동반성장위원회(상생협력법 제20조2 제2항)**
 -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및 적합업종 합의 도출·공표
 -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한 사항





개념 및 사용용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이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자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①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발전, 상생협력 촉진 및 동반성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사용용도

상생협력법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⑤ 상생협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에 관한 사업
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 사업
3. 대·중소기업 간 인력교류 확대 사업
4. 대·중소기업 간 환경경영협력 촉진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 상생협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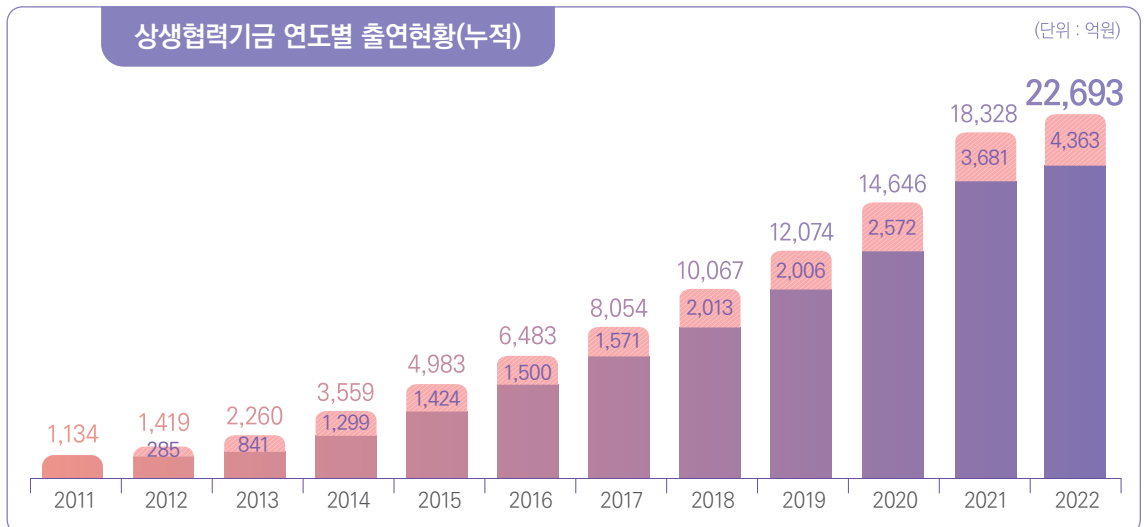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추진경과 및 출연현황

추진경과

- '10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신설('13.12.31까지 세제혜택)
- '14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개정('16.12.31까지 세제혜택 연장)
- '16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개정('19.12.31까지 세제혜택 연장)

기존	내용	개정
~'16.12.31	세제혜택	~'19.12.31
7%	법인세공제율	10%
① 연구개발 ② 인력개발 ③ 생산성향상 ④ 해외시장진출 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기금 사용목적	폐지
- '17
 -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신설('18.5.29) -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신설('18.1.1)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19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개정('22.12.31까지 세제혜택 연장)
- '20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개정('22.12.31까지 일몰기한 연장)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 연장(5년→10년)
- '21
 -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구축(fund.win-win.or.kr)
 - * 주요기능 : [상생협력기금] 출연신청, 출연·지원현황 확인, [투자자원] 과제신청, 지급신청





출연혜택 및 관련법령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세제혜택 관련법령(2023.12월 기준)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법」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손금산입한도액 : [기준소득금액-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1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34호

2023년 3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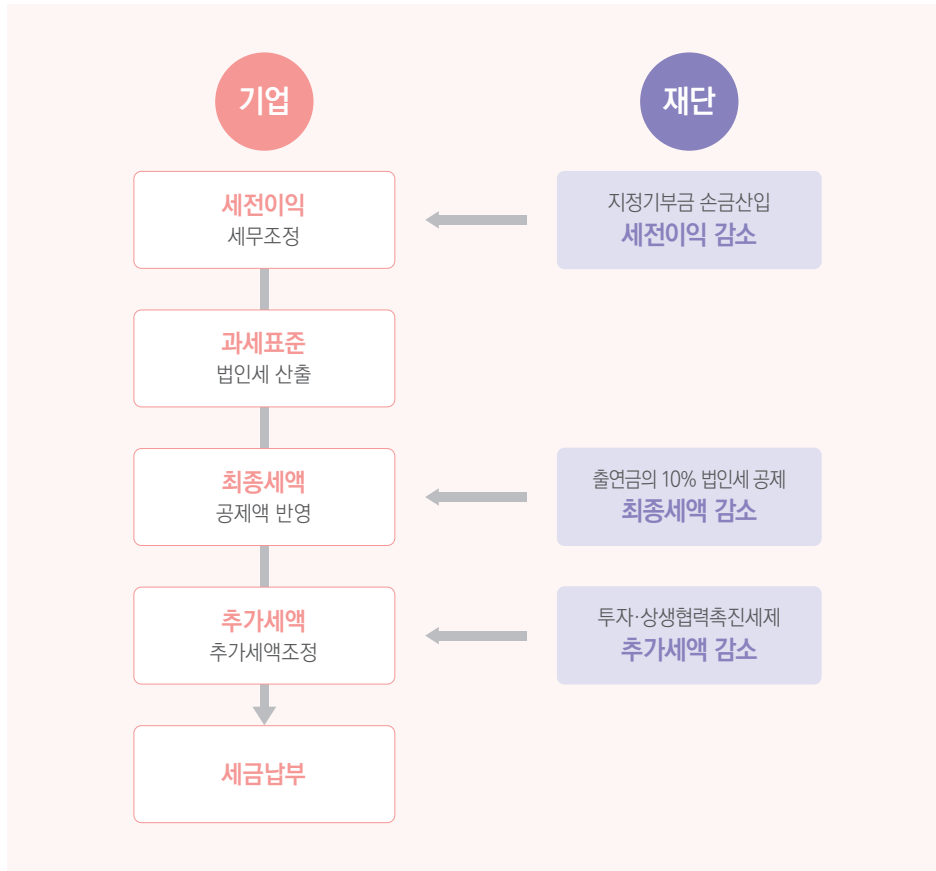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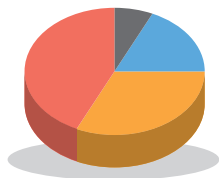
법인세 산출 시 세제혜택 적용 과정

법인세 계산구조



참고사항

법인세법 제55조(세율)



과세표준	세율(누진세적용)	
2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금의 20%	+ 0.2억 원
200억 원 초과 3천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금의 22%	+39.8억 원
3천억 원 초과	3천억 원 초과금의 25%	+655.8억 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과세방법

조특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제2호 방식 중 선택

제1호
(투자형)

$[기업소득 \times (60\sim 80\%) -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times 20\%$

- ⊗ 기계장치 등 자산 투자 합계액
- ⊗ 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증가금액의 가중치 최대2배 또는 절대금액)
- ⊗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지출금액의 가중치 3배) 60~80% → 70%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항 1호 다목)

제2호
(비투자형)

$[기업소득 \times (10\sim 20\%) - (임금증가+상생협력)] \times 20\%$

- ⊗ 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증가금액의 가중치 최대2배 또는 절대금액)
- ⊗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
(지출금액의 가중치 3배) 10~20% → 15%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2항 1호 다목)

※ 과세표준(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 기업소득 : 사업연도 법인소득 + 가산항목(국세 등 환급금 이자 등) - 차감항목(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등)

과세표준별
절세효과 분석

과세표준별 절세효과

- ⊗ **세제혜택** : ①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②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호 비투자형)
 ③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α : ②번 세제산출 시 ①번에 따른 기업소득 감소 효과분(15%×20%=3%)이며,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는 기업소득을 3천억원으로 보므로 해당없음

과세표준	세제혜택 효과(%)					
	①	②	③	① & ② & ③		
				① + ② + ③	α	소계
2억원 이하	10	60	10	80	3	83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60	10	90	3	93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60	10	92	3	95
3천억원 초과	25	60	10	95	-	95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활용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출연금의 최소 83%~최대 95%까지 세제혜택 발생 가능
 단, 자본총액 500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2번 항목의 혜택은 불가능
 ※ 기업의 경영환경에 따라 변동 가능



검토사항

상생협력기금 활용 시,
아래와 같이 활용가능 여부를 자체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지원 내용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용도

지원대상의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지원 불가)

2단계

조세특례제한법

특수관계인 지원 대상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한
특수관계인은 지원 불가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사항	예	아니오
지원 내용	① 지원내용이 「상생협력법」 제20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사용용도에 해당 하는가?	○	
	② 지원항목이 출연기업에 적용되는 법률(하도급법 등) 또는 지원기업과의 계약사항에 따라 출연기업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③ 지원기업이 지원내용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원금에 대하여 매출로 계상하지 않고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였는가?	○	
지원 대상	④ 지원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가?	○	
	⑤ 지원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가?	○	
	⑥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가?	○	
수행 기관	⑦ 출연기업은 사업수행을 위해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정상적인 가격으로 비용을 책정했는가?	○	
공동 R&D	⑧ 지원내용이 상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대금과 구분되어 시제품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 비에 해당하는가?	○	
	⑨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발생한 성과물(시제품, 지식재산권 등)은 지원기업에 귀속되는가?	○	

※ 상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금을 활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00조의32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출연기업에게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활용사업

<p>1</p> <p>민간자율 기획사업</p> <hr/> <p>민간자율 추진사업</p> <p>민간 100%</p>	<p>2</p> <p>구매조건부 공동R&D</p> <hr/> <p>R&D 지원</p> <p>민간 50%, 정부 50%</p>	<p>3</p> <p>산업혁신운동</p> <hr/> <p>2·3차 협력사 컨설팅</p> <p>민간 100%</p>	
<p>4</p> <p>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p> <hr/> <p>스마트공장 구축 지원</p> <p>민간 50~70%, 정부 30~50%</p>	<p>5</p> <p>대·중소기업 혁신 파트너십</p> <hr/> <p>협력사 혁신활동 지원</p> <p>민간 70%, 정부 30%</p>	<p>6</p> <p>대·중소기업 동반진출</p> <hr/> <p>해외 판로개척</p> <p>민간 30%, 정부 70%</p>	<p>7</p> <p>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p> <hr/> <p>창업벤처 등 민간자율 추진사업</p> <p>민간 100%</p>
<p>8</p> <p>성과공유제</p> <hr/> <p>성과공유제 시행지원</p> <p>민간 100%</p>	<p>9</p> <p>협력이익공유제</p> <hr/> <p>협력이익공유제 시행지원</p> <p>민간 100%</p>	<p>10</p> <p>동반성장위원회 협력사 ESG 지원사업</p> <hr/> <p>ESG 진단, 교육, 현장실사(컨설팅)</p> <p>민간 100%</p>	<p>11</p> <p>지역사회 동반성장</p> <hr/> <p>동반성장 문화의 지방·지역사회로의 확산</p> <p>민간 100%</p>





정의 및 추진절차

민간자율 기획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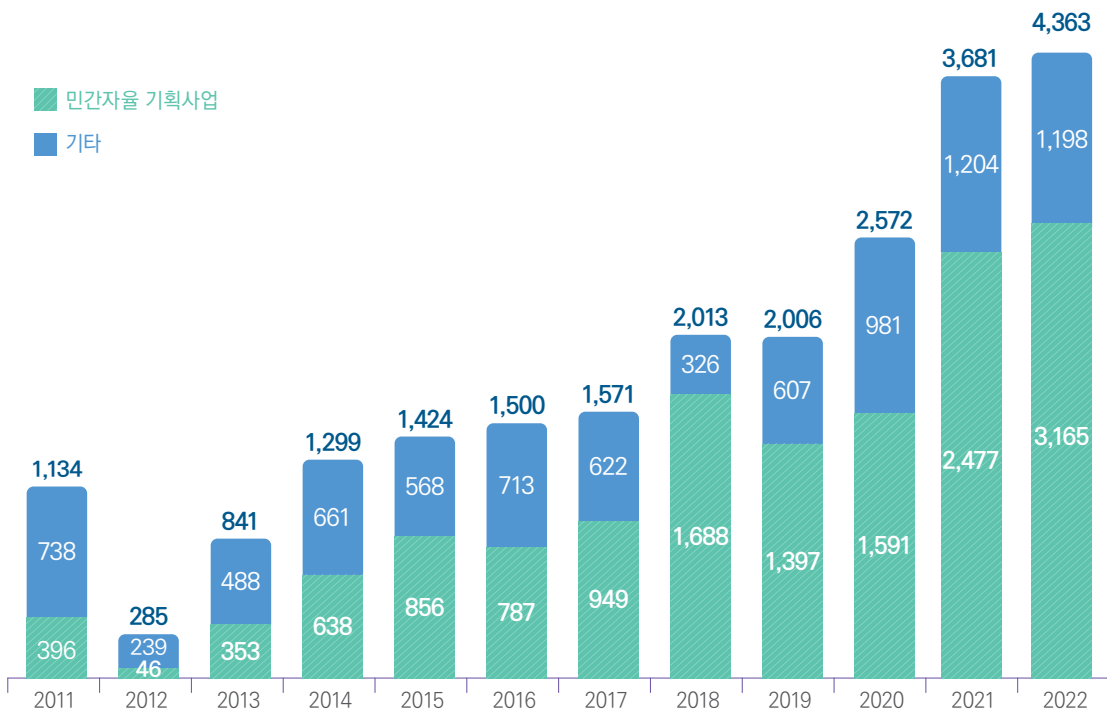


내국법인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을 「상생협력법」제20조의5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의한 사용용도에 따라 중소기업을 수혜자로 하여 협력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민간자율추진사업

사업 연도별 출연 규모

(단위 : 억원)

■ 민간자율 기획사업
■ 기타



민간자율 기획사업

추진절차

「출연신청」, 「과제심사 신청」, 「지원금 지급신청」은 상생협력기금 종합관리시스템 (fund.win-win.or.kr) 사이트 내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 * 경우에 따라 「출연신청 및 출연」과 「과제심사 신청」 순서 변경 가능합니다.
- ** 지원사업 심사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례



**성과의
공정한 배분**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



기술협력촉진
연구 개발 인력,
기자재 시설,
신제품 개발비 지원



인력교류 확대
온·오프라인
직무 및 기술교육 등



환경경영협력 촉진
환경·녹색경영 관련
설비구매 비용,
컨설팅 비용



**임금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신규인력 채용 지원금,
채용박람회,
내일채움공제 등



생산성향상
기술·경영·공정 컨설팅,
안전설비 지원,
각종 인증지원



기술보호
기술임치,
특허·지식재산권
취득관련 비용



창업
창업·벤처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등



국내외 판로확대
국내외 전시회,
구매상담회, 홍보,
인증비용 등



거래공정화
거래관련 보험료,
보증보험 수수료,
상생특별보증 등



문화유산
협력사 협의체
간담회 지원,
복지후생 관련
건강검진·상조·식대비

민간자율 기획사업

1 기술협력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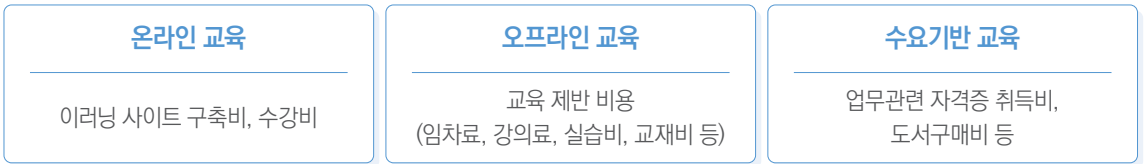
- 아이디어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신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연구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

* 상생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결과물(시제품,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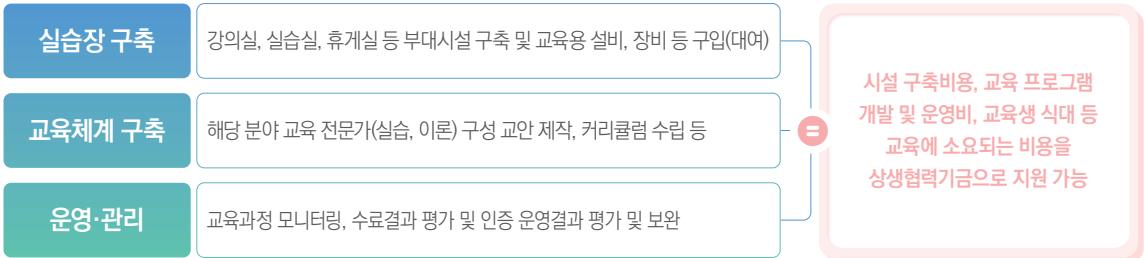


2 인력교류 확대

-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 자기주도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 산업별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 제공



3 환경경영협력 촉진

-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컨설팅 및 설비, 인증 등 지원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생산성·품질 향상

지원항목 컨설팅비, 설비 구매비, 친환경 인증 비용, 협력사 ESG 컨설팅·평가 비용, 친환경 R&D 지원 등



4 임금 격차 완화 및 일자리 창출

☀ 채용관련 비용 및 인건비 지원 →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

상생격려금	채용장려금	채용박람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임금 지원	고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신규 채용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및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프로그램 소요비용 지원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제부금 지원

5 생산성 향상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스마트 공장 구축(설비 구입) 지원
→ 생산공정의 표준화·자동화로 작업능률 향상 및 자체 품질관리 신뢰성 제고



6 기술보호

☀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활용 지원 → 기술유출 방지 및 기술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유지

지원항목 기술임치 서비스 이용료, 특허법인 수수료·특허청 관납료 등 소요비용 전반

* 협력재단을 수치인으로 하여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를 지원하는 경우 과제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7 창업지원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 벤처 기업 사업화 지원

→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도모

지원항목 창업공간 지원, 멘토링, 사업아이템 고도화 등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비용 지원



8 국내·외 판로확대

-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통한 매출확대에 기여

국내·외 전시회 참여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홍보비, 통역비, 출장비(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
홍보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 지원(디자인, (해외)번역비 등), 브랜드 개발비, 홍보 영상(인서트) 제작비
제품홍보관 운영	홍보관 인테리어비, 그래픽 제작비, 설치비, 운영비 등

9 거래 공정화

- 거래에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특별보증 → 중소기업 재무건전성 제고 및 유동성 확보

지원항목 이행(계약, 선금금, 하자)보증보험료, 상생특별보증*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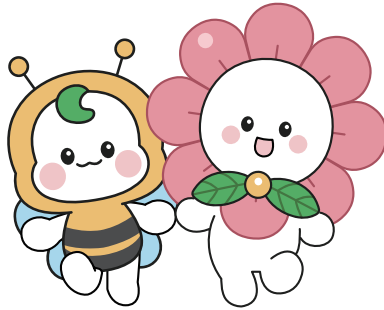
* 상생특별보증 : 대기업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특별 출연한 재원으로 협력중소기업에 신용보증(운용배수 10~15배)을 보증총량한도 소진 또는 대위변제로 특별출연금 소진 시까지 대출 제공

10 동반성장 문화확산

- 대·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력활동 지원
→ 중소기업 임직원 복리후생 증진 및 지속적 협력관계 강화

지원항목

					
건강검진	간담회	임직원 자녀 장학금	생활 (식대, 통근 지원)	임차료	안전설비



동이 & 반이와 함께 '동반성장' 생태계 만들어 나가요!

꿀벌과 꽃은 서로에게 꿀과 열매로 이로운을 주는 대표적인 공생 관계로, 현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캐릭터 스토리

열심히 일하는 꿀벌 '동이'와 최고의 친구 꽃 '반이'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입니다.

동이는 반이가 '상생열매'를 맺을 수 있게 가루반이를 해주고 반이는 동이에게 '함께honey(꿀)'을 선물해주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이입니다.

열정적인 동이가 상생이 필요한 곳에 짠하고 나타나면 반이는 동이를 도와 옆에서 올바른 조언을 해줍니다.

둘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상생협력 파트너입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관련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 각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TEL 02-368-8771 FAX 02-368-8709 MAIL fund@win-win.or.kr

